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과 장 박시영 사무관 허원석	042-481-8197 042-481-8555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열풍 중미 5개국 FTA로 K-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8년 2월 21일 서명)으로 인하여 중미국가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미 5개국 :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K-POP과 드라마로 촉발된 코스타리카 등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류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기업의 상품으로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을 통해 노출된 상품, 캐릭터 등을 활용한 부가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미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중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기업 유명상표인 경우 일정요건이 만족된다면 다양한 상품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리기업의 우수한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기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상표도 중미 5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우리기업의 소리상표 국내 출원 동향 :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17건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산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효과적인 지재산 보호를 위하여 설립될 ‘지재산 위원회’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여 지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허원석 사무관(☎ 042-481-8555)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한-중미 FTA 주요 타결 내용[산업재산권 분야]

□ 경 과

- 제1차 협상('15. 9., 서울)~ 제7차 협상('16. 10. 24.~31., 서울) 개최
 - ※ 중미 5개국 :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 양측간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실질 타결 선언('16. 11. 16., 니카라과)
- 한-중미 FTA 정식 서명('18. 2. 21., 서울)

□ 주요 타결 내용(지재권 분야)

- 산업재산권 전반에 WTO TRIPS 이상의 높은 수준의 보호 확보
 - 또한, 지재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 현안 및 이행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소통·협업 채널(연 1회 개최) 구축

<한-중미 FTA 지재권 분야 주요 타결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상 표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상표 등록·출원 절차(이의신청, 취소 등)
특 허	특허 우선심사 제공, 공지에외 기간 12개월
디자인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
기 타	지재권위원회 구성

□ 향후 일정

-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추진('18년 상반기 예정)
- 중미 5개국의 FTA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재권위원회를 통한 의견 개선 추진

붙임 2

기타결 · 발효된 FTA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한-칠레 FTA (’04. 4. 1. 발효)	▪ (칠→한)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로 보호 ▪ (한→칠) Pisco(포, 증), Pajareto(포, 증), Vino Asoleado(포) 3개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한-싱가포르 FTA (’06. 3. 2. 발효)	▪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 지정 ▪ 한국 특허출원과 동일한 싱가포르 출원의 빠른 심사 처리
한-EFTA FTA (’06. 9. 1. 발효)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GI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한-ASEAN FTA (’07. 6. 1. 발효)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한-미 FTA (’07. 6. 30. 서명, '12. 3. 15. 발효)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특허 공지에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소리상표·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한-인도 CEPA (’10. 1. 1. 발효)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양국 특허청간 별도 협력 MOU 체결 추진
한-EU FTA (’11. 7. 1. 잠정발효, '15. 12. 13. 전체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사용이 확립된 선행상표는 계속 보장) ▪ * (한→EU) 치즈, 와인 등 162개, (EU→한) 보성녹차 등 64개 ▪ 의약품 분야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한-페루 FTA (’11. 8. 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 (한→페) Pisco Peru 등 4개, (페→한) 보성녹차 등 82개 ▪ 유전자원/전통지식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한-터키 FTA (’13. 5. 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 * (한→터) Hereke, Bunyan(카페트) (터→한) 고려홍삼, 고려백삼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한-콜롬비아 FTA (’16. 7. 15. 발효)	▪ 소리상표·냄새상표 보호 ▪ 유명상표 보호 강화
한-호주 FTA (’14. 12. 12.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 특허 공지에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등
한-캐나다 FTA (’15. 1. 1. 발효)	▪ (캐→한) 고려홍삼, 백삼, 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 ▪ (한→캐) 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호밀위스키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
한-뉴질랜드 FTA (’15. 12. 20.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단체표장 보호(특허 조항은 미포함)
한-베트남 FTA (’15. 12. 20. 발효)	▪ 유명상표 보호 강화 ▪ 특허 공지에외요건 완화 및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 명시
한-중 FTA (’15. 12. 20. 발효)	▪ 유명상표 보호(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우리기업의 상표는 중국 상표청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명상표로 보호) ▪ 실용신안권 분쟁시 법원에 근거자료(평가보고서) 제출 규정 ▪ 지재권 챕터의 이행·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
한-중미 FTA (’18. 2. 22. 정식 서명)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심사 제공, 공지에외기간 12개월,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 등 TRIPs 이상 보호 수준 확보 ▪ 지재권 챕터의 이행·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위원회 구성